
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염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7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4.

발 의 자 : 염태영 · 김동아 · 이학영  
김준혁 · 윤후덕 · 복기왕  
김승원 · 조승래 · 손명수  
정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임대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료거래 등 사실과 다른 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,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열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 세무조사의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

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09조제1항제4호  
신설 등).

##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국세 또는 체납액”을 “국세, 체납액 등의 과세정보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세무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심층세무조사”라 한다) 진행 여부에 관한 정보. 이 경우 열람 신청일 당시 심층세무조사로 인한 국세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국세 부과절차 진행 여부 및 결정 또는 경정할 세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) 제10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층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

<p>②·③ (생략)</p>	<p><u>조에서 “심층세무조사”라 한다) 진행 여부에 관한 정보.</u> <u>이 경우 열람 신청일 당시 심층세무조사로 인한 국세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국세 부과절차 진행 여부 및 결정 또는 경정할 세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.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	---